

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송재혁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3109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2년 03월 10일

발 의 자 : 송재혁, 김기대, 김기덕,
김제리, 김태수, 김평남,
박기열, 박순규, 송도호,
송아량, 오현정, 유정희,
이광성, 이영실, 임종국,
전병주, 전석기, 홍성룡,
황규복 의원(19명)

1. 제안이유

-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의 추천 권한은 구의회에 있으나 추천 절차에 정해진 방법이 없어 주민 갈등 발생 및 추천 절차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,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주체를 시장으로 규정함(안 제4조제1항)
- 나. 자원회수시설 소재 자치구청장이 공개모집 등의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주민대표 추천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함(안 제4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
- 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(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)”을 “(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시장은 주민지원협의체를 법 제17조의2제1항과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자원회수시설 소재 자치구청장과 자치구의회의 협의회 구성한다.
- ② 자원회수시설 소재 자치구청장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 중 주민대표 추천대상자를 공개모집 등의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선정하여 구의회에 추천 의뢰하여야 한다. 공개모집의 방법과 절차 등 세부 계획의 수립은 해당 자치구의 조례나 지침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.

제4조제3항(중전의 제1항) 중 “신상변동으로 자격이 상실된 경우 또는 사임한 경우에는”을 “신상 변동으로 자격을 잃거나 사임한 경우,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